

【 12 】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10. 15.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사유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서 제분업의 등록과 휴업폐지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절차 등에 대한 조례가 불필요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편 산업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1989. 6. 16]
[조례 제 745 호]

개정 1989.11.15 조례 제1293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이하 “제분업”이라한다)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분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한다.

제 3 조(제분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을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당해 시설이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제분업은 신고할 수 없다.

제 4 조(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의 신고를 한자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설, 증설 개설 또는 축소의 경우
 - 가.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다. 시설의 변경이유서
2. 합설의 경우
 - 가. 사업계획서
 - 나. 합설동의서
 - 다.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라. 합설이유서
3. 양도 또는 임대의 경우

제10편 산업 양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가. 대지 및 가공시설의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나. 인감증명서

다. 신고필증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그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개신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분업의 폐지, 휴업신고) ① 제분업의 신고를 한자가 제분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분업신고를 한자가 휴업을 한때에는 별지 6호서식에 의한 휴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및 휴업신고를 받은 군수는 별지 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기록관리) 군수는 별지8호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필증 재교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신고필증을 분실, 훼손, 손실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81. 6. 16 조례 제745호)

① (적용시기) 이 조례는 1981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및 경기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제분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11. 15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